

# AIDS 예방과 입법부의 역할

—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주양자 / 국회의원

## 1. 들어가는 말

금년은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AIDS에 대한 보고가 있는지 15년째 되는 해이다.

WHO 추산에 의하면 지구상에 2천년까지 총 3~4천만명이 AIDS에 감염되고 이중 1천2백만명에서 1천8백만명이 환자로 판명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우리나라도 85년 6월 주한외국인에서 첫 AIDS 환자가 발견된 이래 95년 9월말 현재 AIDS로 인한 사망자 7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백 89명의 HIV 감염자와 AIDS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더 이상 AIDS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AIDS 정책은 주로 정부의 주도로 계획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그 첫 단초가 되는 것이 “혈액제제, 혈장수입의 통관보고서에 AIDS검사 음성확인서 첨부 의무화” 등 5가지 AIDS 예방 대책을 수립한 것이었으며 이어 87

년 3월 제2종전염병으로 AIDS를 추가고시하여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해 국민과 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AIDS 예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민간단체들도 입법부를 적극 활용해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제안하는 등 정부주도 아래 AIDS의 예방과 환자관리에 체계를 갖추어 나아갔다.

그러나 AIDS는 다른 전염병과 달리 환자가 드러내놓고 신고하기

를 꺼리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예방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아 오로지 확인된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일만이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특성과 함께 감염취약층이 공조적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동성애자, 특수업태부들이라는 점에서 민간참여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오던 중 지난 93년 ‘대한에이즈협회’, ‘한국에이즈연맹’, ‘스톱 에이즈’ 등의 단체가 잇달아 결성되어 정부의 AIDS 정책에 보완역할을 맡을 파트너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민간단체 중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부가 각각 연간 8천만원의 교육홍보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바 있어 금년부터 AIDS 예방사업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입법부의 AIDS 정책

입법부인 국회에서 AIDS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3대 국회

에서 정부가 제안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안, 통과시킨 것이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였다.

이후 14대 국회 개원이후 필자가 지난 94년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산수입혈장에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체계의 허술함을 밝히고 수출국 혈장의 철저한 정도관리를 위해 현지확인과 함께 수입 후 국내혈장관리제도를 운영토록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AIDS 정책을 이끌어냈다.

이어 제177차 정기국회에서는 9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AIDS 바이러스인 HIV 오염 등 수입혈액제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개정법률안'을 필자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추진, 18일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지난 87년 제정당시 누락되어 있던 AIDS 예방과 홍보 교육사업의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따르는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 3. 맺는말

AIDS 관리의 목적은 첫째, HIV 감염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미 HIV에 감염된 사람 또는 AIDS 환자의 치료와 보호 문제이다.

HIV는 아직 예방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감염경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AIDS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외에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입법부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증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통과되자 한 AIDS 예방단체의 관계자가 전

화를 걸어 "지금까지 민간단체가 정부에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개정을 할 생각을 했느냐"고 물어왔을 때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법개정은 국회의 고유기능인데 지난 4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인 필자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음을 몰랐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시 법전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보다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효과적인 AIDS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AIDS 예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AIDS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AIDS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입법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A**